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2025. 5. .
제 출 자 한종우 의원

1.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5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이행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이 삭제된 조항 정비를 위해 회의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회의록 공개기한 규정 마련(제48조 제4항 및 제5항)
- 나.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 고지(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 다. 회의 실시간중계 근거 신설 및 중계 대상을 포함한 운용 규정 마련(제81조)
- 라. 경미한 징계대상행위 본회의 바로 부의 조항 삭제(제7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고
- 나. 규칙안 예고기간 : 2025. 5. . ~ 2025. 5. .
- 다. 예산조치 : 본예산 반영 완료

라. 그 밖의 사항

1) 부서협의 : 해당없음

2) 관련부서 : 해당없음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삼사보고**”를 “**심사보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면저**”를 “**먼저**”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은 회기 종료일 후 30일 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 4 장 위원회

제83조를 제86조로 하고,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를 각각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로 하며, 제78조를 제80조로 하고,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상태에 있는 자

3. 그밖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8조의2(방청의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79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5.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6.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로 결정된 회의를 제외하고, 의회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로 하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상 자료를 임의로 편집할 수 없다.

제 9 장 징 계

제80조(종전의 제7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종전의 제79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 (의안의 회부) ① ~ ⑥ (생 략)</p> <p>⑦본회의는 위원장의 <u>삼사보고</u>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p> <p>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u>먼저</u> 표결한다.</p> <p>2. 3. (생 략)</p> <p>② (생 략)</p> <p>제48조(회의록의 기록·관리 및 공개) ①·② (생 략)</p> <p>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u>전재(轉載)·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신 설></u></p>	<p>제20조 (의안의 회부)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삼사보고</u>-----</p> <p>-----</p> <p>-----</p> <p>-----</p> <p>-----</p> <p>-----</p> <p>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p> <p>-----</p> <p>-----</p> <p>-----</p> <p>-----</p> <p>-----</p> <p>1. -----</p> <p><u>먼저</u>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8조(회의록의 기록·관리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u>전재(轉載)·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을 <u>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u> 다만,</p>

<신 설>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은 회기 종료일 후 30일 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78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상태에 있는 자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

<신 설>

<신 설>

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8조의2(방청의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79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5.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6.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제78조(녹음·녹화등) ① ~ ③
(생략)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④ (생략)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

방해하는 행위

제80조(녹음·녹화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로 결정된 회의를 제외하고, 의회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로 하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상 자료를 임의로 편집할 수 없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
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0조 · 제81조 (생략)

제83조 (생략)

제83조 · 제84조 (현행 제80조 및
제81조와 같음)

제86조 (현행 제83조와 같음)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시행 2024. 6. 3.] [경기도김포시규칙 제35호, 2024. 6. 3., 일부개정]

제20조(의안의 회부)

-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1.9.20, 2014. 8. 4)
- ②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위원에게 배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4)
-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신설 2014.8.4)
- ④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신설 2014.8.4)
- 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14.8.4)
- ⑦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8조(회의록의 기록 관리 및 공개)

- ① 회의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으며,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전문 개정 2008.1.4] <개정 2021.12.31.,2023.2.15.>
-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2.15.)
-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2.15.)

제78조(녹음·녹화등)

-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 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08.1.4)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8.30, 2008.1.4., 2021.12.31.)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8.30)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1.4.,2023.2.15.)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8.30)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②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제81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